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 자료		
보도	2018. 2. 2.(금) 조간	배포	2018.1.31.(수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	이창욱 국장(3145-7460), 양진태 팀장(3145-7471)	

제목 : 금융꿀팁 200선 -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
 - 매주 1~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- 동시에 2016.9.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여든한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”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 - ⑧①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

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'금융관행 개혁 포털' 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'국민 참여방'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제 목	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사례1) A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,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하였음.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,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음 ■ (사례2)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는 담배를 끊고, 꾸준히 운동을 해옴.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,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,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, 보험료를 할인받았음 ■ (사례3)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됨. C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중이었는데,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하였음
꿀 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】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 background-color: #f9f9f9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②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③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④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·변경으로 예방 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</div>

①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

보험계약자가 **경제사정으로**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**보험계약이 해지될**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**유지하면서 보험금(보장내용)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'감액제도'**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**감액신청**을 하면 보험회사는 **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**하고 **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**(이하 '해지환급금')을 계약자에게 **지급합니다**. 신청 이후 소비자는 **감액된 후의 보험료**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.

또한,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**감액완납 제도**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**해지환급금**이 보험료를 내는데 **사용되기** 때문에,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.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**해지환급금**이 많이 있고,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.

다만,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, 변경되는 **보장내용**을 잘 **확인해야 합니다**.

참고로,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**자동대출 납입제도***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다만,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,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자동대출 납입제도란?

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**보험료를 내는**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

②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

금연, 식단관리,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**건강상태**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**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**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**보험료를 할인해주기**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**건강체 할인특약**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**최대 20%***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**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**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,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**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** 수 있습니다.

* 보험회사-상품·가입조건(남/녀, 나이, 납입기간 등)에 따라 할인율 상이

참고로,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**건강관리 노력·성과**에 따라 다양한 **혜택***을 누릴 수 있는 **보험상품**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며, **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**이 가능하니,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* 보험료 할인·환급,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전부·일부 지원 등

③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

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**장기계약**으로, **금융시장 상황의 변화**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**지속적으로 관리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예컨대,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,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**보험료 추가납입**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

변액보험의 **적립금**, **펀드현황**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**보험계약관리내용**, **자산운용보고서**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**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**의 변액보험 **공시실**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**적극 활용**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< 변액보험 펀드 변경 관련 정보제공 내용 >

구분	주요내용	제공시기
보험계약 관리내용	계약자현황, 계약사항, 보험료 납입사항, 특별계정 펀드종류·수수료, 펀드변경 방법·절차* 등	매 분기
자산운용 보고서	펀드별 기간수익률, 누적수익률, 펀드개요, 자산 현황, 비용현황, 투자자산 매매내역 등	매 분기

* 변경절차 : 보험회사 홈페이지, 콜센터,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

변경방법 : 추가납입, 기존 적립금을 다른 펀드로 이동, 향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다른 펀드로 교체

참고로,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(최초 4회), 오토리밸런싱*, 펀드주치의**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,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(예: 주식:채권=4:6)을 정하고, 펀드수익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되면 편입비율이 일정한 주기마다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됨

**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자산 배분전략 등 펀드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가입자에게 상담·자문을 제공하는 전용콜센터

④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·변경으로 예방

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,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만약,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**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***이, **장해보험금** 등은 **피보험자가,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** 각각 받게 됩니다.

* 민법상의 법정상속인

(상속순위) ① 직계비속 → ② 직계존속 → ③ 형제자매 → ④ 4촌이내 방계혈족
(배우자) 제1·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,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

예를 들어,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, **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** 각자 자신의 상속분(分)에 따라 **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**. 그런데,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, 나중에 **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**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, 피해자의 **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**도 있었습니다.

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**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** 것이 좋습니다. 성명,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·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한편,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**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,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** 다만, **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,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

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**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,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.**

그런데 **이사·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 특히,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'**금융주소 한번에**'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**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.**

참고로, '**금융주소 한번에**'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'**FINE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(fine.fss.or.kr)**'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아래의 보험약관 조항은 예시에 불과하므로,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은 각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보험료 감액제도 및 자동대출 납입제도 – 꿀팁 ①

제20조(계약내용의 변경 등)

-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4. 보험가입금액

-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(해지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25조(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)

- ① 계약자는 제26조(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(독촉)와 계약의 해지)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(독촉)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33조(보험계약대출)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. 다만,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(음성녹음)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(음성녹음)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(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)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-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(독촉)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(해지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② 건강체 할인특약 – 꿀팁 ②

제2조(특약의 보장개시일)

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청약한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(이하 “산출방법서”라 합니다)에 정한 바에 따라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로 계산한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써 보장이 개시됩니다.

제4조(피보험자의 가입자격)

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제1호에서 정한 건강상태와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.

1.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(이하 총칭하여 “흡연”이라 합니다)하지 않은 자
 - 나. 수축기혈압(SYSTOLIC)이 140 mmHg 미만이고, 이완기혈압(DIASTOLIC)이 90 mmHg 미만인 자
 - 다. 체질량 지수(Body Mass Index, BMI) 수치(Kg / (m)²)가 17 이상이고 26 이하인 자 [체질량 지수(Body Mass Index, BMI)란 체중(Kilogram)을 신장(Meter)의 제곱으로 나눈 값(Kg / (m)²)을 말합니다]
2.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‘특별조건부특약’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(‘특별조건부특약’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‘특별조건부특약’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를 포함)
 - 나. 이 특약 가입시점의 주계약 보험나이가 20세 이상인 자

제6조(건강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)

- ⑤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4조(피보험자의 가입자격)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가 이 특약을 청약한 때에 회사는 제2조(특약의 보장개시일)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“우량체 보험료”를 납입하며, 정산차액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③ 변액보험 펀드변경 – 꿀팁 ③

제41조(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)

-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OO조(펀드의 유형)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, 펀드별 편입비율은 5%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계약에서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.
- ④ 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.
- ⑤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펀드자동재분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없이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④ 보험수익자 변경 – 꿀팁 ④

제20조(계약내용의 변경 등)

-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.

5 보험계약자 주소변경 – 꿀팁 ⑤

제10조(주소변경통지)

- ① 계약자(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)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